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과 역할에 대해서 조차 언론계 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한국 전체 언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언론계 전체가 참여하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2년 만의 개정, 언론 신뢰 회복의 계기로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협')가 '총대'를 떼었다. 편협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김형기 조선일보 부국장을 비롯한 5명의 기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처음 제정했고 1961년 개정했다. 현행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96년 편협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전면 개정하고 승인한 것으로, 12년 만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저널리즘의 원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규정이 다소 불완전하다고 해서 매번 고치기보다는 그 속에 녹아 있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

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크게 3 가지 이유 때문이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론사 제재 기준으로 쓰여

첫째, 지난 10여 년간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취재가 가능해졌고, 보도한 내용이 1차 미디어를 넘어서 확산·반복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취재·보도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상황들도 기존 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에 내재된 가치와 규범을 대입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윤리를 언론의 특별한 상

황에 응용한 것이 언론윤리이며, 윤리규정은 언론윤리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상황과 현실이 변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단순히 선언적 혹은 이상적 의미를 갖는 규정이 아니라, 실제 신문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서약서를 제출한 신문사의 신문을 심의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 처벌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 자료(www.ikpec.co.kr)에 따르면 2007년 한 해만 해도 신문 기사에 대해 모두 931건, 신문 광고에 대해 360건의 제재를 가했다. 신문 기사에 대한 제재에는 35건의 공개경고(신문사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경고, 정정, 사과와 같은 제재는 해당 신문사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이다. 따라서 기준의 현실 적합성이나 제재 종류와 수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그동안 언론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가령 황우석 교수와 관련해서만도 과학·의학 보도의 윤리 문제, 취재 과정의 윤리 문제, 국익과 진실 사이의 딜레마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를 보도한 'X파일' 사건, 연예인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자살 보도의 윤리 문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반영하거나 추동하는 언론의 노골적 편파성, 이와 연관된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을 들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과 역할에 대해서 조차 언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 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역일간신문 발행인 세미나'.

론계 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규정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인식해 왔던 윤리적 원칙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언론직에 대한 직업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국 전체 '주류' 언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다. 신문 기자는 물론 발행인과 편집인뿐만 아니라 방송 기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및 승인 주체의 하나인 한국기자협회에 방송 기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을 위한 논의를 통해 언론인들이 언론윤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앞으로 많은 논의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개정 과정을 이 글에서 선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단지 현행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문제점 혹은

미비점을 예시해 개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리강령의 평가기준: 체계성, 포괄성, 명확성, 타당성

윤리강령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사안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체계성, 포괄성, 명확성, 타당성 등을 통해 윤리강령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체계성

체계성은 언론윤리의 기본 원칙과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기준들이 강령과 실천요강에 의미 있고 일목요연하게 나열 및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현행 규정은 신문윤리강령의 7개 조항과 실천요강 16조로 구성돼 있다. 실천요강의 각 조항은 모두 60개가 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윤리 이슈 측면에서 개별 조항의 비중과 연결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먼저 기본 원칙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보면, 각 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불균형이 발견된다. 언론윤리강령은 사회가 부여한 권리인 언론자유에 대해 언론인의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 혹은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윤리강령은 '권리' 측면인 '언론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제1조에서 강조된 반면, '책임' 측면이면서 언론윤리의 최고 가치인 '진실 추구'는 제4조 '보도와 평론'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윤리강령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긴박성에서 나온 1957년 강령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현행 윤리강령은 ‘권리’ 측면인 ‘언론의 자유’를 제1조에서 강조한 반면, ‘책임’ 측면인 ‘진실 추구’는 제4조 ‘보도와 평론’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윤리강령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긴박성에서 나온 1957년 강령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보인다.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기본 입장인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나 제6조의 ‘반론권 존중과 매체 접근 기회제공’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강령과 실천요강의 관계도 체계성에서 문제가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의 강령은 16개의 기본원칙과 각각의 원칙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신문윤리강령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강령과 실천요강 사이의 구조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강령 제1조, 제2조, 제3조는 실천요강의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으로 오히려 응축되어 있다. 오히려 실천요강의 16개 조항들이 기본원칙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강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1996년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반론권 존중과 매체 접근의 기회제공을 규정한 강령 제6조 그리고 고운 언어생활을 규정한 제7조는 실천요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런 조항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강령의 조항으로는 부적절하다. 강령과 실천요강을 좀 더 구조화해서 강령에서는 기본 원칙을, 실천요강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천요강의 16개 조항들도 문제다. 각각의

조항들이 언론윤리 규범을 유목화한 것이라고 보면, 모든 유목화가 그렇듯이 항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규정들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여러 조항들에 흩어져 있거나, 서로 다른 성격의 세부규정이 같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가령 언론인의 품위를 규정한 제15조 제3항에 비윤리적 방법의 취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재준칙을 규정한 제2조의 다른 규정들과 유사한 것이다.

자유-책임 간 균형 안맞아 60개 넘는 규정도 정리하자

서로 다른 내용들이 하나의 조항이나 세부규정에 포함된 것도 있다. 제3조(보도준칙)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규정(검증의 원칙)과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중요성의 원칙)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의 세부규정 제3항은 또한 선정보도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제3조 자체가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제1조 제3항에는 개인의 권리보호, 중요한 공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및 차별 금지를 하나의 세부규정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각각 하나의 조항들로 취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10조 제2항은 외부의 압력으로 기사를 없애거나 크기 등을 바꾸어서 안 된다는 내용(독립성)과 음란하거나

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품위 및 청소년 보호)는 내용이 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포괄성

포괄성은 중요한 윤리적 이슈를 가능한 한 모두 포괄했는가의 문제다. 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는 저속한 언행을 사용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윤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이해갈등’은 윤리강령에 빠져있다. 이와 함께 언론윤리가 반영해야 할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문제, 소수자의 보호와 평등원칙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윤리강령에 빠져 있거나 간접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언론 윤리 문제로 쟁점이 되거나 보도관행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들은 개정을 통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실천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적인 이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외국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 보도를 통한 편견 확대 경계
- 자살 보도에서의 유의 사항
- 의학 및 의약품, 건강 관련 보도에서의 신중성
- 인터뷰 보도와 인용에서의 정확성
-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건 보도에서의 원칙
-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북 경로에 대한 보도에서의 주의 사항
-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원칙

(3) 명확성

표현의 정확성·구체성도 확보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나

치게 모호한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자율 규제를 위한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가령 실천요강 제3조 제3항에 ‘선정 보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정의가 없다.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라는 정도이다. 독일 윤리강령에는 ‘폭력과 잔인한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선정적 묘사’란 ‘인간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추락시키는 방식의 보도이며, 죽어가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에서 평론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라는 규정도 모호한 표현의 한 예다.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할 때에도 ‘절제를 잊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표현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가령 이 표현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원의 보도보류 수용 등 타당성 없는 규정도 있어

(4) 타당성

몇 가지 규정들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실천요강 제6조의 보도보류 시한에 관한 규정에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기자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 시한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보다 정확한 취재나 인명의 피해 등 특별히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 윤리규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과정에 있다. '우수한' 윤리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원칙과 실천의 접점을 찾고 독자와 시청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수 있다. 규정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조(평론의 원칙) 제3항은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는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보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평론과 사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13조 제3항의 유괴된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보도제한 요청에 관한 규정도, 이것이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유괴 사건에서도 (무조건)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유괴된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기자가) 판단할 때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개정작업에 참여 높여 신뢰 회복의 전기로

현행 윤리규정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윤리규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윤리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규정의 성격과 용도, 포함되어야 할 가치와 규범, 그리고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국 언론 윤리 현실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필요하다.

윤리규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과정에 있다. ‘우수한’ 윤리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고민과 의지가 물어나는 살아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정 과정에서 벌어질 논의들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실을 분석하고, 원칙과 실천의 접점을 찾고 독자와 시청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개정 작업을 길게 보고,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 가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는 저널리즘이 한국에서 현재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커뮤니케이터로서 가졌던 우월적 지위가 무너지고, 작업 조건이 변화하면서 전래된 것과는 다른 역할을 강요받고, 미디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원칙에서 조차 타협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위기를 언론윤리에 대한 논의만을 통해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윤리강령에 대한 언론계의 활발한 논의가 한국 언론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주〉

위의 내용은 출저 '한국 언론의 윤리 점검 시스템' (2004,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발제문 '신문윤리강령 개정과 신문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2004) 등에서 다루었던 것을 기초로 하여 쓴 것이다.